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12.12.11>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해기사행정처분 요구서

「수산업법」 제62조제1항 및 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·정지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합니다.

인적사항	성 명			
	주 소			
면허종류				
면허번호		제 호	선원수첩번호	제 호
소속회사 또는 어선	회사명		성명(대표자)	
	주소			
	어선명		업종	
	어선등록번호		직책	
위반사항				
처분요구의견				

붙임 : 1.해기사면허증 원본(면허증을 회수한 경우에만 해당하며, 회수일을 적음)

2. 청문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사본 1부(처분요구기관에서 처분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시행한 것을 포함합니다). 다만,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한 문서의 사본
3. 의견 제출서 사본 1부(청문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합니다) 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 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 팩스번호() 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